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에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우선심사 대상을 삭제하고,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”을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한국 특허청에서 「특허협력조약」에 의한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.</p> <p>1. ~ 2의2. (생략)</p> <p>3. <u>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</u></p> <p>4. ~ 5의4. (생략)</p> <p>6. <u>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9. <u>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</u></p> <p>10. ~ 1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4. ~ 5의4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과학기술기본법</u>」 제11조에 따른 <u>국가연구개발사업</u>-----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10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<u>한국 특허청에서 「특허협력조약」에 의한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042-481-8243